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-27호

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디지털전환 견학공장 기업 모집 공고

도 내 중소·중견기업이 견학 및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 공장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디지털전환 견학공장 운영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2. 14.

(재)경기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스마트공장 도입을 원하거나 수준 고도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·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격학 및 벤치마킹이 가능한 모범사례 공장 운영
- 도 내 중소·중견 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향을 제시

□ 지원내용

- 견학공장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, 운영비 지원
 - 공장 설비·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, 기업 홍보자료 제작 (영상, 전 자카달로그 등), 견학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다과
 - 공장 견학 담당자 인건비(총 사업비의 10% 이내), 교육비 등

□ 지원규모 및 유형

- 중소·중견 기업 5개사, 기업별 최대 20백만원 지원 (총 사업비의 90% 이내)
 - 주력업종 및 기타업종 2개 범주 지원

지원유형	세부업종	선정규모
주력업종**	ㅇ 금속 가공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, 전기장비, 식료품, 고무 및 플라스틱	3개사 내외
기타업종	o 전자부품, 섬유제품, 가구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 주력업종 외 업종	2개사 내외

** 도내 제조업 상위 5개 업종, 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의 중분류에 따라 표기함

□ 지원대상 및 조건

- 경기도 소재 기업제조혁신역량 Level 2 이상의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-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,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' 제출 필수
 - ※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에 수준 확인을 받았지만,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' 발급 이 지연되는 경우,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2주 이내에 보완 제출해야 함
 -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,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 (사업자단위과세 적 용 종된사업장 명세)를 통해 신청 가능
- 당해연도 스마트공장 견학프로그램 5회 이상 운영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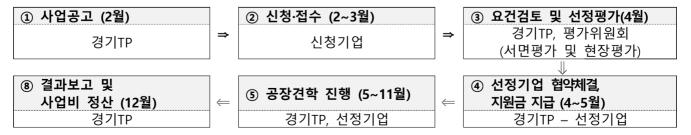
※ 스마트공장 기업제조혁신역량 단계

등급	수준단계	특성	조건(구축수준)	점수
Level 5	고도화	맞춤 및 자율	모니터링부터 제어, 최적화까지	950 이상
		(Customized & Autonomy)	자율로 운영	330 10
Level 4	중간2	최적화 & 통합	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대응 및	850~950
		(Optimized & Integrated)	의사결정 최적화	650~950
Level 3	중간1	분석 & 제어	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가능	750~850
		(Analysed & Controled)		750~650
Level 2	기초2	측정 & 확인	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	650~750
		(Measured & Monitored)		650~750
Level 1	기초1	식별 & 점검	부분적 표준화 및 실적정보 관리	FEO 6EO
		(Identified & Checked)		550~650
Level 0	ICT미적용	미인식 & 미적용	미인식 및 ICT 미적용	550 미만

- 지원 제외대상
 - 휴·폐업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 -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

2.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

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**평가방식** :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로 진행

※ '서면평가'는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며, '현장평가'는 신청기업의 현장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 발표 및 현장 확인 진행

□ 평가기준

No.	구분	평가기준	배점
1	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(30)	· 견학 수요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	15
		· 견학 진행에 필요한 주요 설비 및 솔루션 구축 정도	15
	견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(30)	· 견학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성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	10
2		·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발전 가능성	10
		· 참가자 대상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효과 및 전달 노력	10
3	견학 사업계획 (20)	·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	10
		· 견학 사업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	5
		· 참여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	5
	안전 및 환경 관리 (20)	· 견학 진행에 적합한 공장 내부 환경 조성 수준	10
4		· 비상 상황 대응 절차 수립 및 정기적인 훈련 실시 여부	5
		· 안전장비의 보급 및 정기 점검 체계 운영 현황	5
합계			100

□ 가점 및 감점 사항

○ (가점) 신청기업 및 컨소시엄이 아래 항목 해당 시, 최대 5점 적용

가점항목	배점
· 스마트공장 기업제조혁신역량 Level 3 이상	3
·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공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 10건 이상	3
·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기업	1
·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	3

- (감점)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11개*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, 평가 총점에서 20% 감점 적용
- * (공정) 공정거래법, ❷ 하도급법, ❸ 표시광고법 /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
 - ⑤ 산업안전보건법 /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⑥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 /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 - 사업자 선정 후 확약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취소·보조금 반환,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 여자격 제한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
- 특정 유형의 적격기업 수가 부족한 경우, 해당 유형의 지원예산을 타유형으로 전환 지원 가능하며, 지원예산 추가확보 시 별도 공고 없이 본 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지원 가능
- 지원예산 추가확보 시 별도 공고 없이 본 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지원 가능
- 지원기업은 과제의 목적에 따라 수혜 내용, 성과 및 효과 등을 공개 하여야 하며, 경기TP가 실시하는 각종 만족도, 성과조사, 우수 지원 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기간 및 제출서류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 ~ 4월 3일 18:00까지

○ 제출서류

No.	제출서류
1	■ (붙임1) 사업신청서
2	■ (붙임2) 사업계획서
3	■ 견학 프로그램 운영 소개서(자사양식)
4	■ (붙임3)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5	■ (붙임4)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
6	■ (붙임5)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1부
7	■ 사업자등록증명원 등, 경기도 기업 증빙자료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-민원증명-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
8	■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국세납세증명서: 홈택스-민원증명-국세증명신청-납세증명서 * 지방세납세증명서: 정부24-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-민원출력
9	■ (해당시) 가점 증빙서류(착한기업 인증서, 경기도형 납품단가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공문)

□ 신청방법

-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(https://pms.gtp.or.kr)
 -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(www.gtp.or.kr) '사업공고'의 해당 공고문 '신청하기' 클릭
 -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→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
 -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- 문의처 (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)
 - 031-500-3679, sarang5886@gtp.or.kr
- 붙임 1.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견학공장 신청서 1부.
 - 2.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견학공장 사업계획서 1부.
 - 3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.
 - 4.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1부.
 - 5.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1부.
 - 6.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부.
 - 7. (별첨) 11개 법위반 사실 조회 세부내역 1부. 끝.